

[불 입]

[송도 더샵 센트럴시티]

일반(기관추천)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

I. 공급개요 및 일정

- 위 치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0-4번지(송도국제도시 RM2 블록)
- 공급규모 : 공동주택 지하2층, 지상47층 15개동 총 2,610세대
-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: 총 공급 2,610세대 중 일반(기관추천) 특별공급 251세대

구분	59.9700A	59.9500B	72.9900	84.9700	계
일반(기관추천) 특별공급	68	65	52	66	251

■ 신청자격
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9조 제2항]]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분

추천 대상자	청약통장 구비여부
국가유공자, 장애인	청약통장 필요 없음
제대 군인, 장기복무 군인, 중소기업 근로자, 납북피해자, 북한이탈주민	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아래 특별공급 청약자격 요건을 갖춘 분

■ 당첨자 선정방안

- 일반(기관추천)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및 해당기관에서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에 포함된 대상자만 신청 가능하며, 해당기관 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.

[미신청시 당첨자 선정(동·호수 배정) 및 계약 불가]

- 일반(기관추천)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
- 청약경쟁률이 1: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은 추첨에 의함

■ 일정계획

구분	일 자	참 고 사 항
건본주택 개관	2015. 07. 03 (금) 예정	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0-4 일원
특별공급 신청일	2015. 07. 07 (화) 예정	건본주택 방문접수 (인터넷 청약접수 불가)

※ 위 일정 및 계획은 업무 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II. 특별공급 청약자격 요건

■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. 단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9조 제1항(제1호, 제3호 및 제4호, 제4호의2, 제7호 및 제13호), 제2항[제1호, 제2호 및 제3호(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)]를 제외한다.(국가유공자, 장애인은 제외)는 제외함], 제6항, 제7항에 의한 특별공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

- 일반(기관추천) 특별공급 청약저축 요건

-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 중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
(단, 최초 청약신청자는 신청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(www.ap2you.com)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)
- ②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신청하고자 하는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
- ③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㎡이하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

※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하여야 함

※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등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임

■ 청약예금의 예치금액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조의3 제4항 관련)

구분	인천광역시	서울특별시	경기도
전용면적 85㎡이하	250만원	300만원	200만원
전용면적 102㎡이하	400만원	600만원	300만원
전용면적 135㎡이하	700만원	1,000만원	400만원
모든면적	1,000만원	1,500만원	500만원

※ '15년 2월27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으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조의3 제4항 별표1의2[청약예금의 예치금액]에 따라 해당구간의 금액이 있으면 하위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함

Ⅲ. 특별공급 유의사항

■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

1.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'무주택세대 구성원'이 아닌 자.
 2.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19조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(과거 3자녀 우선공급,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)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(특별공급 1회에 한하여 공급함)
-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, 신청자 및 그 세대원(부부포함) 이 각각 신청,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
(당첨자 명단관리, 계약체결 불가, 입주자 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)
 - "무주택세대구성원"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(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함)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제9호)
 - 가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
 - 나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·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 - 다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(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을 한정함)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 - 라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 -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,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,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
 - 특별공급 대상자는 각 특별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함
 -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,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
 - ※ 청약접수시 무주택 서약서 작성으로 무주택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며, 당첨자의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무주택 입증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
 - ※ 기타 사항은 당사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바람

■ 행정사항

-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건본주택에서 확인 가능하며, 확인결과 위의 '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'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, 동호수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.
(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서 명단 관리되어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 당함)

-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, 해당 기관에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, 특히 주택소유여부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 가능하시므로 추천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미신청시 당첨자 선정(동, 호수 배정) 및 계약불가]

IV. 신청시 구비서류

-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15.07.02 (목) 예정) 이후 발급분에 한함
- 아래 필요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
- 본인 및 배우자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됨
-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
■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시 (각 1통)

구 분	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특별공급신청서	• 신청일에 신청장소(건본주택)에 비치
무주택서약서 및 입증서류	• 무주택서약서 : 신청일에 신청장소(건본주택)에 비치 입증서류: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,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 서류
청약통장가입확인서	• 청약통장 가입은행(중소기업근로자, 군인에 한함)
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
주민등록표등본	•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
주민등록표초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
가족관계증명서	•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및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의 경우
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	• 본인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) 제출,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) 제출

■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

구비서류	비 고
청약자 위임장	•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[양식은 견본주택에 비치]
청약자 인감증명서	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, 청약자가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
청약자 인감도장	• 청약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
대리인 주민등록증	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
대리인 인장(도장)	

V. 유의사항

-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가 신청일[2015.07.07(화) : 예정]에 견본주택(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-9)에서 신청접수치 않을 경우 대상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.
- 당첨자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, 일반공급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(금융결제원)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됩니다.(미신청, 미계약 동, 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 불가)
- 공급금액, 전매제한기간, 재당첨제한기간,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15.07.02 (목)공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분양사무실, 팜플렛 및 사이버 견본주택(www.thesharp.co.kr/songdo)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입주자모집공고일(2015.07.02 (화)예정)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